대한골프협회 「지도자·선수·체육동호인 등록규정」 개정문 요약

□ 주요내용

- ㅇ 제목변경: 「지도자 · 선수 · 체육동호인등록규정」 → 「경기인등록규정」
- ㅇ 용어정립: 경기인(선수, 지도자, 심판), 선수(전문선수, 동호인선수) 등
- ㅇ 스포츠클럽 소속선수의 등록확대를 위해 학제에서→ 연령별 등록으로 개선
- ㅇ 전문체육 선수의 활동제한을 일부 완화, 징계사항에 따른 등록 관리, 심판등록 의무화 (2020.1.1.부터 시행)

■ 경기인등록규정 개정 내용 신·구 비교 (개정 2019. 5.15.)

현 행	개 정	비 고
❑ 명칭: 지도자·선수등록규정	❑ 명칭: 경기인등록규정	포괄적용어로 변경
❑ 용어 정립 -선수, 동호인, 지도자, 심판 등 개별적 용어	❑ 용어 정립 -경기인: 대회 참가 등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선수, 지도자, 심판 -선 수: 전문와 생활체육 선수의 통합운영을 위해 선수로 통칭	
❑ 선수 -등록자격: 학생선수, 학생 외 선수 -등록구분: 초/중/고/대학부/일반부/동호인부 -등록심사: 3단계 심사(시·도협회→시·도체육회→KGA)	❑ 전문선수 -등록자격: 학생 구분 삭제 -등록구분: 13세 이하/16세 이하/19세 이하부/대학부/일반부 -등록심사: 2단계 심사(30일내) (시·도협회→KGA) 시·도체육회 확인심사 생략(업무관련 열람 가능)	(제12조) (제6조, 제16조)

현 행	개 정	비 고
❑ **선수 등록변경 및 활동제한** -이적동의서가 없어도 등록은 가능. 그러나 2년간 활동 제한(출전금지). -협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2년간 미등록한 경우 2년간 활동 제한. (※부적절한 스카웃 방지를 위한 제한 조치)	❑ **전문선수 등록변경 및 활동제한** -이적동의서 의무 제출토록 개선 -이적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신설 -운동경기부가 없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거나, 소속단체 이전 등으로 등록지만 변경할 경우 시·도 협회장의 동의만 받아도 가능 -2년간 미등록 시 1년으로 제한 완화(전문선수에 한함)	(제18조제1항) (제18조제3항) (제18조제2항) (제19조)
❑ **체육동호인** -등록심사: 3단계 심사(시·도협회➔시·도체육회➔KGA) -등록지, 등록변경 등 전문선수와 동일	❑ **동호인선수** -등록심사: 2단계 심사(30일내) (시·도협회➔KGA) -등록지, 등록변경에 따른 제한 없음	(제3장) 동호인 자율성 반영
❑ **지도자** -결격사유, 3단계 심사	❑ **지도자, 심판** -지도자: 결격사유 개정, 2단계심사 -심 판: 선수와 동시등록 불가; 1단계심사(KGA), 2020년부터 시행	(제4장) 공정성 강화
❑ **징계조치** -학교관련자(교장, 교사, 코치): 소속기관장에게 징계의뢰	❑ **징계조치 등** -실효성이 없는 징계의뢰는 삭제 -미등록자가 활동했을 시 2년 등록제한 -결격사유: 제명, 자격정지 등록 불가	(제5장) 공정성 강화

■ 구분별 주요 개정 사항

구분	전문선수	동호인선수
등록 신청 절차	스포츠지원포털 https://g1.sports.or.kr/main.do ❑ **재등록 기한 3.31.→ 5.31.까지 연장(제7조, 제15조제1항)** **-수시등록 가능 대상 신설** (제15조제1항) ・ 13세 이하부 ・ 협회에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(※신규선수 수시등록) ・ 신설팀 소속으로 등록하는 경우 ・ 군 입대 또는 제대로 등록하는 경우	동호인등록시스템 https://club.sports.or.kr/ ❑ **동호인은 매년 수시 등록(제7조)**
	❑ **등록심사 신속 및 절차 간소화** -2단계 심사(30일내) (시·도협회➔KGA) (제16조)	❑ **등록심사 및 절차 간소화** -좌동(제25조) -소속팀 회원확인 절차 추가(팀의 대표가 등록시스템에서 신청한 선수 승인, 등록신청서 제출 불필요) (소속팀 대표 선수확인-시·도협회➔KGA)
	❑ **본인확인(휴대폰인증)이 불가능한 경우 등록신청 업무대행** (제15조제3항) **-전문선수는 시·도협회에서 등록(입력)** -진행절차 ・ **<선수 제출서류>** 개인별카드(수기작성, 단체장 직인날인 必), 사유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증명사진파일(선수등록비 20,000원 무통장 입금) ・ **<시·도 등록(입력)>** 체육정보시스템-등록관리-웹신청선수조회-신규(버튼)-정보입력	❑ **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록신청 업무대행** (제24조) **-동호인은 KGA에서 등록(입력)** -진행절차 ・ **<선수 제출서류>** 동호인선수등록신청서, 사유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(등록비 무료) ・ **<KGA-등록(입력)>** 동호인등록시스템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전문선수</th><th>동호인선수</th></tr>
<tr><td></td><td colspan="2">※지도자(감독, 코치) 및 심판(레프리)은 매년 수시 등록
-지도자는 등록신청서(선수명단 등재된 자료) 또는 소속 단체장이 인정하는 보직 증빙서 제출(개인교습 지도자 등록불가)
-심판 등록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. 당해연도에 선수등록한 사람은 심판등록 불가.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등록
구분
개선</td><td>❑ 연령 구분 등록(제12조)
• 13세 이하부, 16세 이하부, 19세 이하부(연령-출생연도 기준임)
• 대학부(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)
• 일반부(만20세 이상 대학생이 아닌 사람, 대학원 및 평생교육원 소속)</td><td>❑ 등록구분 없음
-동호인 조직, 클럽 등의 소속으로 등록</td></tr>
<tr><td>❑ 연령 구분에 따른 학제와의 관계 명확화 (제13조)

-연령과 학제가 다른 경우 해당 학부 대회 출전 불가
• (예시) 1년을 유급한 17세(중 3학년. 실제나이 적용 시 고 1년생)의 경우 당해연도 중등부 대회와 고등학교 3학년 도달 시 고등부 대회 출전 불가.

-연령과 학제가 달라도 활동이 가능한 경우 신설 (제1항)
• 단, 연령차 1년 초과 불가
• 가정빈곤으로 유급 또는 재수한 경우
• 부상,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유급하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
• 입원으로 인해 수업일수가 부족하여 유급한 경우
• 입학연기자 또는 조기입학자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한 경우

-<경과조치> (부칙 제2조)
종전 규정(2019. 5.15. 개정이전)에 따라 등록한 선수는 해당하는 부에 등록한 것으로 보며, 해당 부별 유급 선수, 연령을 초과하여 등록한 선수도 종전 규정으로 갈음.

※전국소년체육대회, 전국체육대회, 전국규모의 대회 등 요강에서 자격 기준이 제한될 수 있음.
('19년 소년체전: 3.참가자격 '마' 초등학교부 참가자는 5,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회(5학년 1회, 6학년 1회)에 한하여 출전하며...</td><td>-해당 없음</td></tr>
</table>

구분	전문선수	동호인선수
등록 변경 개선	❑ **등록지 변경에 따른 이적 동의 개선** (제18조) **-시·도 협회장의 동의만 받아도 되는 경우 신설(제1항)** · 해당 학교에 운동경기부가 없지만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· 소속단체 이전 등의 사유로 등록지만 변경하는 경우 **-이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확대(제3항)** · 13세이하부 · 동일 시·도내 진학·전학하는 중·고등학교 소속의 선수 · 동일 시·도내 중·고교에 운동경기부가 없어 다른 시·도로 입학·전학하는 경우 · 소속 학교가 운동경기부를 해체하고 해당 시·도내 운동경기부 정원이 부족해 다른 시·도의 중·고교에 입학·전학하는 학교 운동경기부 소속의 선수 · 클럽소속의 전문선수가 동일 시·도 안에서 클럽 간에 변경하는 경우 · 16세이하부 또는 19세이하부 전문선수의 보호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전 가족이 전·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· 19세이하부 전문선수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· 군 입대 및 제대로 인해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· 소속단체가 해체된 경우 · 부상,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사람 · 전문선수가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등록일(등록신청일을 등록일로 한다)부터 만 2년이 지난 후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 ※위 사항은 이적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뿐 선수 활동과는 무관합니다(활동 제한됨) (개인별 카드도 수기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함)	❑ **소속 단체 또는 등록지 변경** -동호인등록신청시스템에서 정보만 변경(제27조) -이적동의서, 개인별카드 제출 불필요.
	※등록시스템 개편으로 **이적한 선수는 증빙자료(이적동의서, 개인별카드) 제출과 동시에 등록시스템에서 "이적신청" 을 진행**해야 합니다.	

구분	전문선수	동호인선수
	· 소속팀 변경 : “스포츠지원포털-전문선수등록신청-소속변경(이적)신청” · 이적동의서 창에서 날인받은 증빙자료 있을 경우 파일첨부(전입 사·도 팩스전송 대체가능)	
활동 자격 제한	❑ **소속단체 이적(전학·입학·입단 등)으로 인한 활동제한** (제21조) **-이적 선수의 대회 참가는 기존과 동일** (해당 대회개시일을 기준으로 소속학교, 단체에 최소 2개월 재적기간을 두어야 참가 가능) **-다만, 각급학교 1학년 또는 소속단체 1년차, 해외유학한 사람이 소속으로 복귀하는 경우 3월말 기준으로 대회 참가 가능.** ※다른 시·도로 입학한 각급학교 1학년 선수는 모두 2020년부터 제한 없이 활동 가능. **-선수 포기 및 2년 이상 등록하지 않았을 때 활동제한 2년 → 1년으로 축소** **-프로선수 등록 불가** **-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에 따른 활동 제한(대회참가 등) 근거 신설**	❑ **동호회, 클럽 등 팀 간의 이적은 활동제한 없음** -다만, 전문선수로 실적이 있는 동호인은 해당 대회별 대회요강에서 활동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 신설됨 (제28조제2항) -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에 따른 활동 제한(대회 참가 등) 근거 신설